아 산 정 책 연 구 원

이슈브리프

No. 2026-13

미-이란 전쟁의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심상민

선임연구위원

2026-04-22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협을 이유로 대규모 선제공격(장대한 분노 작전)을 단행하여 이란 지도부를 타격했다. 이에 반발한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고,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을 봉쇄하고 통행료 부과를 추진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전쟁의 주요 군사적 행위들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선제공격은 '임박한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이 아니므로 자위권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후 중동 주둔 미군에 대하여 벌어질 이란의 임박한 무력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일 수 있다. 이란의 주변국 미군 기지 공격 역시 수용국이 미국의 작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주권 침해와 부당한 공격에 해당한다. 주변국 민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도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라고도 함]상 군사목표물만을 공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의 위반이다. 또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된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영해 통과 선박에 수수료 부과를 강제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

한편 미국이 이번 작전에서 보여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의 초고속 공격 방식은 국제인도법 전문가들이 논의해 온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Human-in-the-Loop)'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했다. 앞으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한 강대국의 국가 실행을 통해 군사적 AI의 자유로운 사용이 새로운 관습국제법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법의 규제적 초점은 전장에서 인간의 개별적 통제를 묻는 방식에서 무기체계 설계 및 사전 검증 단계의 시스템적 통제와 책임 확립으로 급격히 전환될 전망이다.

이번 미-이란 전쟁은 높은 대외 무역 및 에너지 의존도를 가진 우리나라에 중대한 안보적·정책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사입장국과 연대하여 통행료 부과를 거부하고 무해통항권 보장을 촉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제 통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국적 작전 참여를 검토하되, 방어적 호송과 항행 안전 확보로 임무를 국한하는 정교한 교전수칙을 세워 국제법 위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군의 독자적인 AI 무기체계 도입에 대비하여 무기 전 주기에 걸친 연속적 적법성 검토,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XAI) 기술 적용 등을 의무화하는 선제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

미-이란 전쟁 자체의 국제법적 분석

2026년 2월 28일에 개시된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란 명칭의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은 작전 대상 지역이었던 이란, 그리고 중동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6년 4월 8일 미국과 이란은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휴전의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무력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무력충돌 초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연합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란은 이후 이스라엘 영토 및 주변국에 주둔한 미군 기지 및 주변국 에너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미사일 공격을 산발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며, 비대칭적 보복을 명분으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아라비아 반도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여 전 세계 유가 폭등 및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6주간 진행된 미-이란 전쟁을 둘러싸고는 여러 평가가 진행중이다. 제한된 정보 접근과 불확실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관련국들의 무력 사용에 대한 국제법 측면에서의 평가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중 적대행위 논거의 타당성과 국제법적 정합성 여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이란 공습: 정당성 인정, 예방적 자위권으로 파악 가능

2026년 2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란 간의 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다.[1] 미국은 이란 측에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농축 우라늄의 전량 국외 이전을 통해 모든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란은 주권 침해라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 직전 단계에 이르렀으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해 역내 및 글로벌 안보에 실존적 위협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를 향해 선제적인 대규모 군사작전을 단행했다. 이에는 미 해군 군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동맹국 기지에서 출격한 미군 및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주요 타격 목표는 이란 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 지휘 시설, 방공망,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군사 비행장, 그리고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지도부의 주요 시설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i)가 폭격으로 사망하는 등 이란 지도부 인사 다수가 군사작전의 희생자가 되었다.[2]

미국은 이란 선제 타격의 근거를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으나,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 제거를 위한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의 행사로 이해되고 있다.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440여 kg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란이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3] 이는 이스라엘과 역내 동맹국, 미군에 대한 실존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군사작전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것이다. 핵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체제 밖에 있는 어떤 국가이든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한다면,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 자체는 수단의 국제법적 합치성 여부를 떠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이란 공습을 발표하기 위한 대국민 영상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해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4]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도 3월 2일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중동 내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재촉하게 될 것을 알았다"며 "그들(이란)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5] 역시 미군에 가해질 임박한 위협에 선제대응한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 자위권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자위권은 유엔헌장 제2조 4항상의 일반적 무력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armed attack)'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해당 회원국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위권 행사 요건을 자세히 보면 1) 무력공격이 발생하여야 하며, 2) 취할 조치들이 무력공격에 비례적(proportional)이며 꼭 필요한 것(necessary)이어야 하고, 3) 무력사용이 발생한 후 즉각적으로(immediately) 이루어져야 하며, 4)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원칙 등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다만 현대 무기체계의 급속한 발달로 무력공격이 있은 후에만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실효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므로[6] 현대 국제법은 장래에 대한 임박한 위협에 대한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의 개념을 인정하는 추세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무력공격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무력공격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즉 무력공격이 임박한(imminent) 경우 상대방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위권의 행사로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습국제법상의 자위권은 유엔헌장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넓은 범위의 것으로 이해되며, 여기에 예방적 자위권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를 표현한 것으로 Webster 공식이 있는데,[7] 이는 1837년 발생한 Caroline호 사건[8]의 해결을 위해 미 국무장관인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가 주미공사인 애쉬버튼(Ashburton)경에 보낸 서신의 일부로서 "임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숙려할 시간도 없는 자위의 필요(necessity of self-defense, instant, overwhelming, leaving no choice of means, and no moment for deliberation)"가 있으면 예방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임박한 위협의 내용이 반드시 '무력공격의 위협'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무력공격과 관계없는 상황을 강제로 종료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예방적 자위권의 범주에 포함되기 힘든 무력 행사이다. 미국이 이란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음을 이유로 무력을 동원하여 이란의 군사 시설 등을 타격한 행위는 1) 임박한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고, 2) 그 위협의 임박성(imminency) 자체도 미국의 주관적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여, 자위권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루비오 국무장관이 언급했듯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해 이란이 보복의 일환으로 중동 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을 감

행할 것이 예상되었다면 이는 '임박한 무력공격의 위협'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미국의 무력 행사는 예방적 자위권 행사로 볼 수 있다.

2. 이란의 주변국 소재 미군기지 공격의 합법성: 인정하기 어려워

하메네이 사망과 본토 폭격에 격분한 이란은 즉각적인 대규모 보복에 나서,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으며, 이스라엘 방공망이 이들을 대부분 요격했으나 일부 지역에 파편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9]

이와 더불어 이란은 카타르 도하의 알 우데이드(Al Udeid) 공군기지, 바레인의 미 제5함대 사령부,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살렘(Ali Al Salem) 공군기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Prince Sultan) 공군 기지, 아랍에미리트(UAE)의 알 루와이스(Al Ruwais) 군사 시설 등 중동 전역에 위치한 최소 17곳의 미군 및 동맹국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10] 이들 중동 국가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의 상당수는 미국의 군사작전 지원에 동원되었으나, 이들 기지의 수용국들은 해당 작전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이를 지지하지 않았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자국 영토가 이란 공습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이란은 이들 기지를 공격한 것이다.[11]

이란이 주변 지역 미군 기지들을 군사적 목표물로 파악하고 무력을 행사한 것은 최소한 교전행위의 일부로서 합법성이 인정될 수는 있다.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 지역의 모든 미국 자산이 정당한 목표물이라고 밝혔고, 이란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라 외교장관 명의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송부하며 "이란은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였다.[12]

그러나 이란이 제3국의 영토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한 것은 미국의 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정당한 대응 여부와는 별도로, 위에서 언급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 따라 타국의 영토를 향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해당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미군 기지라 할지라도 그 부지는 엄연히 수용국의 영토이므로, 수용국의 동의 없는 이란의 미사일 타격은 해당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고, 국제법상 위법한 행위이다.

여기에서 추가로 고려할 점은 미군 기지 수용국의 '영토 사용 허락'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1974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Definition of Aggression)' 결의 제3조 (f)항에 따

르면, "자신의 영토를 타국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그 타국이 제3국을 향해 침략행위를 하도록 한 국가의 행위(action of a State in allowing its territory, which it has placed at the disposal of another State, to be used by that other State for perpetrating an act of aggression against a third State)"도 침략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며,[13] 이란은 이에 대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 예로서 만일 미군 전투기들이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 등에서 이란 폭격 임무를 띠고 출격했고, 해당 국가가 이를 승인했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했다면, 이란은 이 국가를 '공동교전국(Co-belligerent)'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란은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국제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행위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위치한 연합 공군 작전 센터는 '장대한 분노' 작전 신경망의 축으로 기능하였으므로[14] 이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정당한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카타르가 해당 작전을 알고 있었는가 여부이다. 적어도 미군 기지 수용국들 상당수가 해당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사전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15]에 기초해 볼 때, 이들 수용국은 자국 내 미군 기지가 어떠한 형태로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였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란의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은 이들 국가의 주권 침해 및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의 위반을 구성한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자국 내 기지가 대이란 공격에 사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음에도 이란이 타격을 강행한 것이므로, 이는 이들 주권국가들에 대한 위법한 무력공격으로서 명백하고 중대한 주권 침해 행위가 된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중동 국가들 역시 이란을 상대로 자위권을 행사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전을 우려하여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이란의 주변국 에너지 시설 등 공격: 국제법 위반

이란은 주변국 미군 기지를 공격한 외에도 주변국들의 에너지 시설과 민간 인프라를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함으로써 이들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비대칭적 파괴로 전선을 확대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UAE 아부다비의 합샨(Habshan) 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특히4월 3일에 해당 시설에 대한 이란의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UAE 당국이 이를 요격하는 과정에서 미사일 잔해가 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다.[16]

이외에도 이란은 UAE의 두바이 국제공항[17] 및 푸자이라(Fujairah) 석유 수출항구,[18]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및 카타르의 정유 및 LNG 시설[19]을 타격하여 민간인 사상자 및 에너지 공급 교란과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였다.

이란은 이러한 에너지 시설 및 민간 인프라 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1) 자위권의 행사, (2) 자국 사우스 파스(South Pars)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근거와 관련하여, 이란 외교부 대변인인 에스마일 바가에이(Esmail Baghaei)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란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정당하고, "침략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어떠한 형태의 군사기지, 시설 및 자산은 정당한 목표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였다.[20] 두 번째 근거로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사우스 바스 가스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삼레프(Samref) 정유시설 및 주바일(Jubail) 석유화학단지, UAE의 알 호슨(Al-Hosn) 가스전 및 카타르의 메사이드(Mesaieed) 석유화학단지와 라스 라판(Ras Laffan) 정유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 시설이 직접적이고 정당한 목표물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21]

그러나 두 가지 근거 모두 이란의 주변국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국제법상 정당화할 수 없다. 무력충돌 시에도 적용되는 국제법을 통칭하는 무력충돌법의 대원칙은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으로서, 이는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이 민간인/민간물자와 전투원/군사목표물을 구분하여 적법한 공격을 군사목표물에만 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22] 이란의 공격을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란의 주변국 민간 에너지 시설 공격은 이 원칙들 중 핵심적인 구별의 원칙, 즉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들 에너지 시설이나 민간 인프라가 일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이중용도(dual use) 시설이나 인프라로서 공격이 가능한 군사목표물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그 분류 기준은 "그 성격, 위치, 목적, 용도상 군사행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일부 내지 전부의 파괴, 포획, 중화가 해당 상황에서 확실한 군사적 이득을 제공(by their nature, location, purpose or use make an effective contribution to military action and whose partial or total destruction, capture or neutralization, in the circumstances ruling at the time, offers a definite military advantage)"하는 가이다.[23] 이란이 공격 대상으로 삼은 에너지 시설이나 민간 인프라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에 기반해야 하겠지만, 이들 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등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대체 공급망이 확립되어 있는 한 그 파괴가 확실한 군사적 이득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란의

주변국 에너지 시설 및 민간 인프라 공격은 구별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란 내 사우스 파스 가스전 등 에너지 시설 공격은 같은 이유로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이란에게 교전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을 공격할 법적 근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인도법은 교전과 무관한 당사자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민간인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복 대상으로 주변국들의 민간 에너지 시설을 특정하고 공격한 것은 역시 구별의 원칙의 위반이다.

결론적으로 이란의 주변국 민간 인프라 및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은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해당하며, 어떠한 국제법적 정당화도 불가능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통행료 부과: 국제법 위반

1. 사태 진전

이란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자국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단행했다.[24] 이란은 해당 해협의 완전 봉쇄가 아니라 적대국 선박을 제외한 비적대국 선박의 통행은 가능하다며 공식 서한을 유엔 안보리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 발송하는 등 국제 사회의 반발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취하였다.[25] 그러나 실제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해상에 기뢰를 부설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원하는 선박들은 약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내야만 이란 영해 내 안전한 통항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26] 실제로 3월 30일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Security Committee)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 및 통행료 부과 규정을 포함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계획안(Strait of Hormuz Management Plan)'을 승인하였다. 이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미국 및 이스라엘 소속 선박의 해협 통과 금지,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한 해협 접근 제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보 강화 조치, 이란 해군 함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세부 프로토콜 수립, 이란군의 해협 관리 역할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7]

이에 대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통항에 사용되는 수로임을 강조하며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3월 22일 이란을 향해 48시간 이내에 해협 봉

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으나,[28] 3월 24일 이란과의 대화가 생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며 군사작전 실행을 유예했다.[29] 그리고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30] 이에 대해 이란은 이러한 휴전안을 수용하며 "이란 군과의 조율을 통해, 그리고 기술적 한계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함께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31]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휴전 기간 동안에도 과거와 같은 선박의 자유로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란 혁명수비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선박에 한해 이란 영해를 통한 통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제법적 분석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및 통행료 부과의 위법성 여부는 앞서 논의한 미국의 무력공격 및 이란의 주변국 미군기지 및 에너지 시설 등 타격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해양법 및 무력충돌법에 기반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란의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 대한 입장과 관습국제법의 해석, 그리고 무력충돌법의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하에서 설명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통행료 부과는 관습국제법 및 무력충돌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가. 관습국제법상 무해통항권 침해

호르무즈 해협은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에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국제해협(International Strait)'이다. UNCLOS 제38조에 따라 국제해협에서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에 통과통항권(Right of Transit Passage)이 부여되는데, 이는 해협을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과할 목적으로만 행사되는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의미하며, 연안국은 이를 방해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제44조). 따라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이론상 이 통과통항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된다.

그런데 이란은 1982년 UNCLOS에 서명만 했을 뿐 비준하지 않은 국가이다. 따라서 핵심적인 쟁점은 UNCLOS 미비준국인 이란에 통과통항권 보장 의무를 강제할 수 있을 지이다. 원칙적으로는 통과통항권이 UNCLOS상 권리의 형태로 존재하는 한 UNCLOS 비회원국인 이란은 이를 존중할 의무가 없으며, 통과통항권이 협약상의 권리를 넘어 관습국제법이 되었을 때에만 이란도 이에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란은 UNCLOS 서명 당시에 행한 해협 문제에 관한 해석 선언에서 통과통항권은 관습국제법을 법전화한 것이 아니며 UNCLOS 가입국에만 부여되는 계약적 권리라고 주장했다.[32] 반면 미국, 프랑스, 영국은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은 이미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본다.[33] 즉 통과통항권은 UNCLOS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가 누리는 보편적 권리이며, 이란 역시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통과통항권이 관습국제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34] 다만 이란은 앞에서 언급한 해석선언을 통해 통과통항권의 관습국제법화 초기부터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명한 '지속적 반대자(Persistent Objector)'로 보아야 하며, 국제법 일반원칙에 따라 이러한 경우 이란은 설령 통과통항권이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나 통과통항권이 호르무즈 해협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란이 아무런 제약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습국제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고 UNCLOS 규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35]은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외국 선박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란도 이를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무해통항권은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및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의 영해를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항행하는 한 보장된다. 연안국은 안보상 긴요한 경우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일시적으로 이를 '정지(Suspension)'할 수 있으나(UNCLOS 제25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중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협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협을 통한 무해통항은 정지될 수 없다(UNCLOS 제45조). 연안국은 또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고,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만 부과할 수 있다(UNCLOS 제26조).

따라서 현재 이란이 실행하고 있듯 상선과 제3국 선박까지 포함하여 국제해협을 전면 봉쇄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란도 인정하는 관습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나. 무력충돌법상 관습국제법 위반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교전이 '국제적 무력충돌(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AC)'로 격화된 상황이라면, 평시 해양법(UNCLOS)보다는 해전법(Law of Naval Warfare)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교전 당사국인 미국의 군함이나 군사용 항공기의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뢰를 부설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자위권 및 해전법상 적대행위의 일환으로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전시라 할지라도 국제해협을 전면적으로 봉쇄하여 전쟁과 무관한 중립국(한국, 일본, 유럽 등)의 원유 수송선 등 일반 상선의 통항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현재 적용가능한 해전법규를 망라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산레모 해전법 매뉴얼(San Remo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s at Sea)[36] 등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적법한 해상봉쇄(Naval Blockade)라 하더라도 중립국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국제해협의 통항로 자체를 완전히 폐쇄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특히 산레모 해전법 매뉴얼은 중립국의 선박은 교전국의 국제해협 및 군도수역을 무해통항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제32조), 일부 국제해협에 부여된 무해통항권의 경우 무력충돌 시라도 정지될 수 없다고 하여(제33조), 국제해협을 통한 통항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및 통행료 부과는 이란의 UNCLOS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관습국제법화된 무해통항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되며, 전시 해전법을 적용하더라도 제3국 상선의 항행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미국의 군사영역에서의 AI 사용: 국제규범 형성 논의의 급전환

군사영역에서의 AI 사용 문제는 '군사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AI 이용(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e, REAIM)'이란 이름으로 국제규범화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은 그동안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GGE) 등에서 규범적으로 논의되던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 MHC)' 또는 '인간의 개입(Human-in-the-Loop, HITL)'이라는 이상이 실제 전장의 압도적인 기술적 속도 앞에서 어떻

게 형해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향후 자율살상무기체계(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 LAWS)와 군사적 AI 사용에 관한 국제법 형성 관행을 완전히 뒤바꿀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1.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 기준의 붕괴와 자동화 편향

기존의 국제법 논의는 기계가 스스로 인간 살상 결정권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 공격 실행의 최종 단계에 반드시 '인간의 개입'을 요구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수천 개의 목표물을 AI가 동시다발적으로 식별하고 공격을 추천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시간 압축(Time Compression)과 인지적 과부하로서, 인간 조작자가 각 목표물이 민간인인지 전투원인지(구별의 원칙), 부수적 피해가 군사적 이익에 비례하는지(비례성의 원칙)를 판단할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라는 개념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다.

둘째, 자동화 편향(Automation Bias)으로서, 결국 인간은 AI의 목표 식별 및 공격 추천을 맹신하여 이를 기계적으로 '승인(Approve)'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전체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인간이 개입하는 'Human-in-the-Loop'의 외관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의미 있는 통제'가 완전히 상실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번 미국의 군사실행은 이러한 기계적 승인만으로도 인간의 통제가 작동하였다고 간주함으로써 군사 영역에서 광범위한 AI 사용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선례를 구성할 수 있다.

2. 관습국제법 형성 과정에서의 '국가 실행(State Practice)' 주도권 변화

국제법, 특히 관습국제법은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통해 형성되는데,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고도화된 군사 AI를 사용하여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를 달성했다면, 이는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국가 실행'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주법(Space Law)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우주활동 관련 국가 실행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현상과 비견할 수 있다.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은 AI 기반의 초고속 의사결정 구조가 오히려 공격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군사목표를 초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민간인의 부수적 희생을 줄이는 등 국제인도법을 더 잘 준수하게 한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여타 주요국들의 명시적, 암묵적 동의를 얻어 속성 국제관습법화를 촉진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AI 기술력이 없는 국가들의 규범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주도로 'AI의 고속 처리 속도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인간 감독(Human-on-the-Loop 또는 Human-out-of-the-Loop로의 완화)'이 새로운 국제법적 표준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

3. 법적 책임의 패러다임 전환: 개별적 통제에서 '시스템적/사전적 검증'으로

이러한 새로운 관행은 국제법의 초점을 전장에서의 '개별적 공격 결정 통제'에서 '무기체계의 설계 및 사전 검증' 단계로 급격히 이동시킬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국제법이 어느 정도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한계도 명확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공격목표 식별 및 공격 결정의 경우 무기체계 조작자가 주어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극히 낮으므로, 행위자의 책임을 사후적으로 묻는 국제법·국제규범보다는 해당 AI 시스템의 도입 시 기존 국제법에 따른 검토, 예를 들어 1977년 제네바협정 제1추가의정서 제36조에 따른 '신규 무기 적법성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동 조항은 국가가 새로운 무기를 연구, 개발, 획득할 때 그 사용이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행위규범적 통제에 비해 의미 있는 인간 통제 구현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휘관의 책임(Command Responsibility)에 관해서도 전장에서의 명령 실행자보다는 교전 수칙(Rules of Engagement, ROE)을 AI 알고리즘에 어떻게 코딩했는지, 훈련 데이터에 편향성은 없었는지 등 시스템 설계와 전개 결정을 내린 고위 지휘관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국제형사법 체계가 재편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규범의 이러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요소들 또한 곳곳에 산재해 있다. 예를 들어 전술적 우위 달성을 위해 전장에서 위에서 언급한 자동화 편향을 은연

중 장려한다든지, 신무기 도입 검토 시 압도적 전력 구성을 위해 군사영역에서의 AI 이용의 효율성에 매몰된 결정을 내린다든지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I를 동원한 미국의 이번 대이란 군사작전은 국제사회가 막연히 합의해 가던 'Human-in-the-Loop' 원칙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으며, 향후 군사 AI 관련 국제법 논의는 '공격 결정 순간의 인간 통제'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버리고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시스템 전반의 통제 및 책임 귀속'을 묻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026년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이란의 보복,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무역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에너지 안보 불안 및 실존적·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미-이란 전쟁은 단순한 중동의 분쟁을 넘어 해양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특히 앞서 그 위법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주도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한 통행료 부과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국제법 준수의 기조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과 이란의 공동관리하에 두면서 수수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안[37]에 대한 대응이 포함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개발 및 시험 중인 AI 기반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고효율 달성과 '의미 있는 인간 통제' 간의 미묘한 균형이 이번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계기로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참여해 온 군사영역에서의 AI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에 관한 입장 재정립이 필요한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국제법적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언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기로 한다.

1.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 거부 및 통항 안전 확보 위한 다국적 작전 참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피하는 방안으로 이란은 통행료를 지불하는 선박에 한하여 자국 영해 내 안전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란의 통행료 부과는 이란도 인정하고 있는 관습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의 침해를 야기하며, 이러한 무해통항권은 중립국 선박의 경우 무력충돌 시에도 허용되며 중지되지 않음을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전시라고 하여 관습국제법의 내용을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만일 우리나라가 통행료 부과를 수용한다면 이는 관습국제법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변경된 추후 국가실행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어 우리의 UNCLOS 및 관습국제법상 권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단순한 영해 통항에 대해 연안국이 외국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만 그 선박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UNCLOS 제26조). 이란은 안전 통항을 확보해 준다는 것, 즉 기뢰 부설 수역을 피할 수 있는 항로 제공을 이러한 특별한 용역으로 주장할 지 모르나, 항행의 안전은 이란이 해협 봉쇄 목적으로 기뢰를 부설하거나 항행중인 선박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확보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안전 항로 좌표는 이미 이란 국경수비대에 의해 공개되어 있어,[38] 이란이 영해 무해통항권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안전한 항행이 가능하며, 여기에서 주어질 추가적인 안전 통항의 확보 조치는 이란 국경수비대의 공격 자제뿐이다. 외국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수수료 부과의 근거로 삼는 행위를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

통행료 부과 문제는 미국이 참여하여 이란과의 공동사업(joint venture)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관습국제법의 내용을 제한하려는 행위를 범하는 국가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단기간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국제법상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통행료 부과를 거부하고, 이란 정부에 대하여 관습국제법상 인정되는 영해 무해통항권의 보장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통행료 부과를 공동으로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현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동산 원유와 LNG를 대체할 수 있는 여타 지역의 공급국들과 신속히 도입 협상을 진행하여 에너지 공급불안 상황의 여파를 최대한 제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나토(NATO) 중심의 다국적 공동작전 구상도 논의되고 있다. 마르크 뤼터(Mark Rutte) 나토 사무총장은 2026년 3월 22일 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뉴질랜드, 바레인, UAE 등이 참여하는 22개국 규모의 공동 작전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39] 그리고 프랑스의 주도로 2026년 3월 26일에는 다국적 합참의장 화상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한 35개국 군 수장이 참여하여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의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전투가 중단된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 재개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프랑스 국방부의 설명이 있었어서,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무력 사용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40]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해협에서의 무해통항권은 관습국제법적 권리인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여 통항을 봉쇄하는 것은 전 세계 국가의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제위법행위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이를 물리적으로 제거 – 예를 들어 소해작전을 실시 – 하는 것은 불법적인 항행 장애물을 치우는 정당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국적 공동작전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인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사용 승인 결의 채택은 현 국제정치상황상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유엔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이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국들과 조율해 마련했던 방어적 성격의 노력 조율을 권고하는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기도 하였다.[41]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국적 공동작전 구상이 구체화되더라도 이는 '의지의 연합'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참여국들은 개별적·독자적으로 국내법적·국제법적 명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은 국제적 조율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와 안전 확보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1) 휴전 등으로 전투가 종료된 이후, (2) 목적의 정당성이 보장되고, (3) 무력의 사용을 국제 통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4) 국내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만 작전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해군 함정 파견의 형태로 다국적 공동작전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무력의 동원은 방어적 호송 내지 항행의 안전 확보에 국한되어야 하고, 이를 넘어선 공세적 무력행사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교전수칙을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뢰 소해작전 참가나 우리 함정을 향하여 공격해 오는 선박의 격퇴는 방어적 목적에 합치하는 무력의 행사로서 허용하되, 기뢰 부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란 고속정 기지의 공격 등은 적

법하지 않은 활동으로서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4월 8일 휴전 후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협상이 결렬되자 미군이 구축함 2척 등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여 4월 13일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42] 다만 이란 항구 외의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막고 해협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러한 입장의 변화가 지속될 것인지 그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국가실행을 감안한 AI 무기체계의 국제법적 정합성 확보

미국이 실전에서 보여준 AI 기반의 초고속 다중 공격 실행은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Human-in-the-Loop)'라는 기존 국제인도법의 규범적 합의를 형해화할 것이 확실하다. 한국군 역시 국방혁신 4.0을 통해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려 하고 있는데,[43] 분명히 이러한 새로운 군사적 실행과 규율 내용이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국제법·국제규범 간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들, 즉 전시 민간인의 보호나 비례의 원칙과 같은 것들을 AI가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기존 국제법규범 중 기술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적용가능한 것을 식별하고, 그것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대화하고 운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아직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무력충돌법상 법규범은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6조상의 '신무기 체계 검토'라고 보이나, 이를 동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접근법을 군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편향 등으로 AI에의 과도한 신뢰 부여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군사 목표의 초효율적 달성을 위해 감내해야 할 비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신무기 도입의 적법성 검토를 일회성 검토에서 전 주기적(Lifecycle) 연속 검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의 AI 무기는 실전 배치 후에도 새로

운 교전 데이터를 학습하며 알고리즘과 공격 패턴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무기의 개발-배치 단계에서의 일회성 검토를 넘어서서 설계-데이터 학습-시뮬레이션-실전 배치-운용 중 모니터링에 이르는 무기체계 전 주기에 대한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적법성 검토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AI가 과도한 목표달성 지향성으로 인해 초기 승인된 매개변수(Parameters)를 벗어나는 판단을 할 경우 즉각 운용을 중단하고 재검토를 거치거나 킬스위치 가동을 의무화하는 등 최종 단계에서의 인간의 개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의 강조이다. 국제인도법상의 '구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AI가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AI의 결정이 얼마나 예측가능한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제36조의 신무기 적법성 검토 절차 내에 '합리적인 예측 가능성'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AI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며, 테스트의 방법론과 평가지표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I의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요구이다. AI가 특정 목표물을 타격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인간 지휘관이나 사후 조사관이 이해할 수 없다면 전쟁범죄 발생 시 지휘관의 책임(Command Responsibility)을 묻는 국제형사법 체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신무기 적법성 검토 단계에서 '설명 가능한 AI(XAI)' 기술의 적용 수준을 의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격 결정의 근거를 지휘 통제소에 실시간 또는 사후적으로 평이한 언어의 형태로 명확히 보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가 국제법에 합치하는 군사 AI인지 여부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심상민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나왔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국제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국 전력산업에서의 기후변화 법-정책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법학박사학위(JSD)를 취득하였고, 미국 환경법연구소(ELI) 방문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국제법 강의 외에 다양한 국제법 이슈에 관해 연구 및 정부 자문을 행하고 있으며, 특히 핵비확산·북핵 문제, 해양법, 북한인권, 국가책임, 기후변화, 그리고 비전통안보 현안(환경, 에너지, 경제, 인간안보)을 주요 연구분야로 삼고 있다.

[1] Patrick Wintour & Andrew Roth, “US-Iran Nuclear Talks End without a Deal as Threat of War Grows,” *The Guardian*, February 26, 202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feb/26/trump-attack-threat-looms-as-nuclear-talks-between-us-and-iran-go-to-wire.
[2] “Why Did US and Israel Attack Iran and How Long Could the War Last?” *BBC*, April 6, 2026, https://www.bbc.com/news/articles/cx2dyz6p3weo.
[3] Max Zahn, “What to Know about Iran's Uranium Enrichment and Its Role in the Middle East Cconflict,” *ABC News*, April 18, 2026, https://abcnews.com/Business/irans-uranium-enrichment-role-middle-east-conflict/story?id=132057549.
[4] 이상규, ““미국이 이란 공격한 건″…명분 찾는 트럼프가 밝힌 이유”, 매일경제, 2026년 3월 4일, https://www.mk.co.kr/news/world/11978108.
[5] 배시은, “루비오 ″이스라엘 때문″…이란 공습 명분 ′임박한 위협′ 놓고 말 바꾼 미국 행정부”, 경향신문, 2026년 3월 3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31539001.
[6] 이창위, ″예방적 자위권과 비공개적 공작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서울법학』, 제26권 제1호(2018), p.113.
[7] Matthew Waxman, “Book Reviews -- The 'Caroline' Affair in the Evolving International Law of Self-Defense,” LAWFARE, August 28, 2018, https://www.lawfareblog.com/caroline-affair.
[8] Caroline호 사건이란 1837년 12월 29일 영국 정부의 지휘통제하에 있는 캐나다 민병대가 나이아가라 강을 건너 캐나다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던 미국 항구에 정박 중이던 Caroline호를 전소시킨 사건이다.
[9] Hugo Bachega & Robert Greenall, “Nine Dead in Missile Attack on Israel as Iran Strikes Region,” *BBC*, March 2, 2026, https://www.bbc.com/news/articles/c363zkp1pgxo.
[10] Bora Erden & Leanne Abraham, “At Least 17 U.S. Sites Damaged in War with Iran, Analysis Shows,” *The New York Times*, March 11, 2026,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6/03/11/world/middleeast/iran-us-military-bases-strikes-map.html.
[11] Cathrin Schaer, “Will Gulf states enter the Iran war?” DW, March 1, 2026, https://www.dw.com/en/iran-war-saudi-arabia-united-arab-emeriates-bahrain-qatar-involvement/a-76175593.
[12] Peter Aitken, “Iran Demands UN Security Council Meeting to Address US, Israel ‘Aggression’,” *Newsweek*, February 28, 2026, https://www.newsweek.com/iran-demands-un-security-council-meeting-to-address-us-israel-aggression-11598882.
[1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finition of Aggression, Resolution 3314 (XXIX), December 14, 1974, Article 3(f). 이 결의 제1조에 따르면 침략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그리고 이 정의에 나타나 있는 유엔헌장과 일치하지 않는 기타의 방식으로 행사되는 무력의 사용(use of armed force by a State against the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other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s set out in this Definition)”으로 정의된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이 침략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면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나, 침략의 정의 결의 제2조상 “유엔헌장을 위반한 국가의 선제 군대 사용은 일견(prima facie) 침략의 증거를 구성한다(The First use of armed force by a State in contravention of the Charter shall constitute prima facie evidence of an act of aggression […]”고 되어 있으므로, 본 브리프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침략행위로 추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14] Global Security, Operation Epic Fury – Air Campaign, 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epic-fury-air.htm.
[15] Samy Magdy et al., “Gulf Allies Disappointed U.S. Didn't Notify about Iran Attacks and Ignored their Warnings, Sources Say,” *PBS*, March 6, 2026, https://www.pbs.org/newshour/world/gulf-allies-disappointed-u-s-didnt-notify-about-iran-attacks-and-ignored-their-warnings-sources-say.
[16] 김상훈, “아부다비 가스시설에 파편 낙하…이집트인 1명 사망”, 연합뉴스, 2026년 4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4003800079.
[17] 김지숙, “두바이공항, 운영 일시 중단…요격 발사체 파편 사고 따라”, 한겨레신문, 2026년 3월 7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48159.html.
[18] 김상훈·강훈상, “호르무즈 우회 원유수출 UAE 푸자이라 항구 피격(종합)”, 연합뉴스, 2026년 3월 1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4049951009.

[19] 김재영, “사우디 홍해 석유터미널에도 드론...쿠웨이트·UAE·카타르에 이어 (종합)”, 뉴시스, 2026년 3월 19일, https://nwww.newsis.com/view/NISX20260319_0003556053.
[20] Holly Ellyatt & Emma Graham, “Iran Defends Strikes on Gulf Neighbors — But They Say Trust Is Broken,” *CNBC*, March 10, 2026, https://www.cnbc.com/2026/03/10/iran-strikes-gulf-neighbors-us-assets-oil-infrastructure.html.
[21] Jillian Ambrose, ”Iran Threatens Gulf Energy Facilities after Israeli Attack on Its Largest Gasfield,” *The Guardian*, March 18, 202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mar/18/iran-gulf-energy-facilities-israel-south-pars-gas-field-saudi-arabia-uae-qatar.
[22]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Principle of Distinction, https://casebook.icrc.org/law/principle-distinction.
[23] ICRC, Rule 8. Definition of Military Objectives, https://ihl-databases.icrc.org/en/customary-ihl/v1/rule8.
[24] Staff & Aresu Eqbali, “Iran Claims Hormuz Closure as Oil Tanker Traffic Drops Sharply,” S&P Global, February 28, 2026, https://www.spglobal.com/energy/en/news-research/latest-news/crude-oil/022826-iran-claims-hormuz-is-shut-down-after-irgc-threat-to-shipping-tasnim.
[25] 장효인, “이란 "비적대적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IMO 회원국에 서한”, 연합뉴스TV, 2026년 3월 25일,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25093251SsF.
[26] Raf Sanchez, “Iran's 'Tehran toll booth' forces some tankers to pay millions to leave Strait of Hormuz,” *NBC* News, March 27, 2026, https://www.nbcnews.com/world/iran/irans-tehran-toll-booth-forces-tankers-pay-millions-leave-strait-hormu-rcna265258.
[27] 송치훈, “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계획안 승인”, 동아일보, 2026년 3월 31일, https://faq.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331/133642132/2.
[28] 김은중, “트럼프, 이란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개방 않으면 발전소 초토화"”, 조선일보, 2026년 3월 22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6/03/22/YT6XAJ6YXVFW3KC7RDCJ2YU6KY.
[29] 이유미 등, “트럼프 "이란과 쟁점합의" 발전소 폭격 닷새 유예...이란 "대화無"(종합3보)”, 연합뉴스, 2026년 3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3164553009.
[30] 백나리·이유미, “트럼프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조건으로 2주간 공격 중단 동의"”, 연합뉴스, 2026년 4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8018651071.
[31] 이신영 등, “미·이란, 2주간 '휴전·호르무즈 개방' 합의...파국 피했다(종합2보)”, 연합뉴스, 2026년 4월 8일,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408018653071.
[32] Declarations and Reservations, Iran (Islamic Republic of),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III.aspx?src=TREATY&mtdsg_no=XXI-6&chapter=21&Temp=mtdsg3&clang=_en.
[33] Said Mahmoud & Martin Ratcovich Leopardi, Transit Passage, Oxford Public International Law, https://opil.ouplaw.com/display/10.1093/law:epil/9780199231690/law-9780199231690-e1231.
[34] 통과통항권이 관습국제법화되었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Mohd Hazmi bin Mohd Rusli, “A Historical Overview on the Legal Status of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ALC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 Issue 2, p.130 참조. 통과통항권을 관습국제법상의 권리로 볼 수 없다거나 관습국제법화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기범,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지위와 청해부대 활동의 범위,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0-04, 2020년 2월 11일, p.7;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Eighth Edition, p.428 참조.
[35] Kari Hakapää, Innocent Passage, Oxford Public International Law, https://opil.ouplaw.com/display/10.1093/law:epil/9780199231690/law-9780199231690-e1178.
[36] ICRC, San Remo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s at Sea, June 12, 1994, https://ihl-databases.icrc.org/en/ihl-treaties/san-remo-manual-1994.
[37]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해협 통항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해협 통항의 안전을 보장하는 관리제도를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수료도 징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진우,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아주 멋진 일"...이란과 공동관리도 거론", 연합인포맥스, 2026년 4월 9일,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8480.

[38] 이영경, "호르무즈 지도에 '위험 지대'…이란 혁명수비대, 기뢰 설치 시사하며 미국 압박", 경향신문, 2026년 4월 9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91527001.

[39] 김무연, "나토 사무총장 "韓 포함 22개국, 호르무즈 해협서 공동 작전 구상"", 문화일보, 2026년 3월 23일, https://www.munhwa.com/article/11576696.

[40] 양대규, "호르무즈 긴장 속 35개국 군 수장 긴급 협의…전쟁 이후 '해상 안전' 대비 본격화", 스마트비즈, 2026년 3월 27일, https://www.smartbiz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525.

[41] 김연숙, "안보리 '호르무즈 개방' 결의안 결국 부결...중·러 거부", 연합뉴스, 2026년 4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8001800072.

[42] 이유미, "美, 한국시간 오늘밤 11시부터 이란 해상봉쇄...호르무즈 일촉즉발(종합)", 연합뉴스, 2026년 4월 1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3007251071.

[43] 국방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AI 과학기술강군 육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년 3월 7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452&pWise=sub&pWiseSub=J2.